

1. 개정이유

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11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미운영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여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(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)
- 나.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추가(안 제12조의6 제1항제4호 및 별표 5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각각 “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“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6항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각각 “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4.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

별표 5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1	시행규칙 제 12조의6	경고	지정취소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	--	--

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4호				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	--	--	--

별지 제20호서식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“○○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“○○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중 “해양경찰청”을 “○○지방해양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해양경찰청장”을 “○○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5(교육기관의 지정)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(이하 “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.	제12조의5(교육기관의 지정) ①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지방해양경찰청장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	③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2조의6(교육기관의 지정취소
· 업무정지 처분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(업무정지) 통지서로 통지하여

④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6(교육기관의 지정취소

· 업무정지 처분) ① 지방해양

경찰청장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

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

지 않은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야 한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·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-----.

④ 지방해양경찰청장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지방

해양경찰청장-----.